

부 록

【부록 1】 3개 시·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부록 2】 경유자동차 차종별·연식별 PM·NO_x
배출계수

1.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1.1] [서울특별시조례 제5026호, 2010.9.3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 등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중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대기법 제58조 또는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2. 대기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시·도 조례로 정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이행기한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3. 특별법 제25조제6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운행제한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에 따른 보조금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모자 착용 또는 표지물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일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부과한다.

부칙 < 제5026호,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련번호 :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

소유자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위반내 용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차 명		차대번호	
	총중량(kg)		배기량(cc)	
	운행장소		운행일시	
	단속방법	무인단속시스템, 단속공무원 단속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단속되었기에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 처음 1회 위반시에는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 동안 행정지도하나 그 이후 위반시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대기관리담당관으로 제출(또는 FAX 02-2115-7759)바랍니다.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대기관리담당관실 (02-2115-7763)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첨부 : 위반사실 근거자료

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2.5.11] [경기도조례 제4380호, 2012.5.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중 경기도 소재 24개 시(市)를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한다.

5.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법 제58조 또는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행제한 대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해차량제한 지역 내에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2. 법 제58조에 따른 시·도에서 정한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한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3. 특별법 제25조제6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② 제1항제3호에 의한 운행제한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도지사는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 사항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물을 부착 또는 착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5조(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① 도지사는 공해차량제한 지역에서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

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위반한 때마다 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일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한다. <개정 2012.5.11.>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2. 제5조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0.3.29] [인천광역시조례 제4410호, 2010.3.2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및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을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또는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제2조제1호의 공해차량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으로 한다) 중 인천광역시 제한지역은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제한지역 안에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없거나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해당 기간 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제5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관리)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제한지역 안의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물(모자 등)을 부착 또는 착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처음 1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차량소유주가 운행제한 대상 차량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1

일 위반 횟수가 1회 이상이더라도 1회로 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2

경유자동차 차종별 · 연식별 PM · NOx 배출계수

차종	세부 차종	오염 물질	연식																			단위 : g/km	
			96연식	97연식	98연식	99연식	00연식	01연식	02연식	03연식	04연식	05연식	06연식	07연식	08연식	09연식	10연식	11연식	12연식	13연식	14연식		
승용차	중형	PM	0.1365	0.1365	0.1365	0.1365	0.1138	0.1138	0.1138	0.0931	0.0931	0.0931	0.0259	0.0259	0.0259	0.0103	0.0103	0.0103	0.0103	0.0103			
		NOx	0.9407	0.9407	0.9407	0.9407	0.8395	0.7819	0.7819	0.6173	0.6173	0.6173	0.2058	0.2508	0.2058	0.1070	0.1070	0.1070	0.1070	0.1070			
	대형	PM	0.1365	0.1365	0.1365	0.1365	0.1138	0.1138	0.1138	0.0931	0.0931	0.0931	0.0259	0.0259	0.0259	0.0159	0.0159	0.0159	0.0159	0.0159			
		NOx	0.9407	0.9407	0.9407	0.9407	0.8395	0.7819	0.7819	0.6173	0.6173	0.6173	0.2058	0.2058	0.2058	0.1070	0.1070	0.1070	0.1070	0.1070			
승합차	경형	PM	0.2141	0.2141	0.1726	0.1726	0.0967	0.0967	0.0967	0.0691	0.0691	0.0691	0.0192	0.0192	0.0192	0.0077	0.0077	0.0077	0.0077	0.0077			
		NOx	1.2135	1.2135	1.1880	1.1880	0.8995	0.8995	0.8995	0.6619	0.6619	0.6619	0.2206	0.2206	0.2206	0.1147	0.1147	0.1147	0.1147	0.1147			
	소형	PM	0.2026	0.2026	0.1634	0.1634	0.0915	0.0915	0.0915	0.0654	0.0654	0.0654	0.0392	0.0392	0.0392	0.0131	0.0131	0.0131	0.0131	0.0131			
		NOx	1.1226	1.1226	1.0991	1.0991	0.8322	0.8322	0.8322	0.5888	0.5888	0.5888	0.3062	0.3062	0.3062	0.2041	0.2041	0.2041	0.2041	0.2041			
	중형	PM	0.4136	0.4136	0.4136	0.1149	0.1149	0.0766	0.0766	0.0766	0.0766	0.0766	0.0153	0.0153	0.0153	0.0153	0.0153	0.0153	0.0153	0.0153			
		NOx	4.0424	4.0424	3.3102	3.3102	3.3102	3.3102	2.2088	2.2088	2.2088	1.5447	1.5447	1.5447	0.8827	0.8827	0.8827	0.8827	0.8827	0.8827			
	고속 버스	PM	0.6671	0.6671	0.3706	0.3706	0.2224	0.2224	0.1482	0.1482	0.1482	0.1482	0.0296	0.0296	0.0296	0.0296	0.0296	0.0296	0.0296	0.0296			
		NOx	13.9308	13.9308	11.3978	11.3978	7.5986	7.5986	7.5986	6.3322	6.3322	6.3322	4.4325	4.4325	4.4325	2.5329	2.5329	2.5329	2.5329	2.5329			
승합 대형	시내 버스	PM	0.7444	0.7444	0.4136	0.4136	0.2481	0.2481	0.1654	0.1654	0.1654	0.1654	0.0331	0.0331	0.0331	0.0331	0.0331	0.0331	0.0331	0.0331			
		NOx	15.6229	15.6229	12.7823	12.7823	8.5216	8.5216	8.5216	7.1013	7.1013	7.1016	4.9709	4.9709	4.9709	2.8405	2.8405	2.8405	2.8405	2.8405			
	시외 버스	PM	0.7046	0.7046	0.3915	0.3915	0.2349	0.2349	0.1566	0.1566	0.1566	0.1566	0.0313	0.0313	0.0313	0.0313	0.0313	0.0313	0.0313	0.0313			
		NOx	14.7500	14.7500	12.0681	12.0681	8.0455	8.0455	8.0455	6.7046	6.7046	6.7046	4.6932	4.6932	4.6932	2.6818	2.6818	2.6818	2.6818	2.6818			
	전세 버스	PM	0.7211	0.7211	0.4006	0.4006	0.2403	0.2403	0.1602	0.1602	0.1602	0.1602	0.0320	0.0320	0.0320	0.0320	0.0320	0.0320	0.0320	0.0320			
		NOx	15.1106	15.1106	12.3632	12.3632	8.2422	8.2422	8.2422	6.8685	6.8685	6.8685	4.8079	4.8079	4.8079	2.7474	2.7474	2.7474	2.7474	2.7474			

(단위 : g/km)

차종	세부 차종	오염 물질	96연식	97연식	98연식	99연식	00연식	01연식	02연식	03연식	04연식	05연식	06연식	07연식	08연식	09연식	10연식	11연식	12연식	13연식	14연식
특수차	구난·레카	PM	1,7602	1,7602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NOx	23,7678	23,7678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기타	PM	1,7602	1,7602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NOx	23,7678	23,7678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소형차	PM	1,7602	1,7602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NOx	23,7678	23,7678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중형차	PM	1,7602	1,7602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NOx	23,7678	23,7678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대형차	PM	1,7602	1,7602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0.5867
		NOx	23,7678	23,7678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14,2607
일반차	경소형	PM	0.1363	0.1363	0.1193	0.1193	0.0937	0.0937	0.0937	0.0937	0.0937	0.0937	0.0937	0.0937	0.0937	0.0937	0.0937	0.0937	0.0937	0.0937	0.0937
		NOx	1,2548	1,2548	1,2281	1,2281	0.8927	0.8927	0.8927	0.8927	0.8927	0.8927	0.8927	0.8927	0.8927	0.8927	0.8927	0.8927	0.8927	0.8927	0.8927
	중형	PM	0.6688	0.6688	0.3246	0.3246	0.3246	0.3246	0.3246	0.3246	0.3246	0.3246	0.3246	0.3246	0.3246	0.3246	0.3246	0.3246	0.3246	0.3246	0.3246
		NOx	8,9459	8,9456	4,8248	4,8248	4,8248	4,8248	4,8248	4,8248	4,8248	4,8248	4,8248	4,8248	4,8248	4,8248	4,8248	4,8248	4,8248	4,8248	4,8248
	대형	PM	1,6434	1,6434	0.5478	0.5478	0.5478	0.5478	0.5478	0.5478	0.5478	0.5478	0.5478	0.5478	0.5478	0.5478	0.5478	0.5478	0.5478	0.5478	0.5478
		NOx	22,3772	22,3772	13,4263	13,4263	13,4263	13,4263	13,4263	13,4263	13,4263	13,4263	13,4263	13,4263	13,4263	13,4263	13,4263	13,4263	13,4263	13,4263	13,4263
	소형	PM	0.1365	0.1365	0.1365	0.1365	0.1138	0.1138	0.1138	0.1138	0.1138	0.1138	0.1138	0.1138	0.1138	0.1138	0.1138	0.1138	0.1138	0.1138	0.1138
		NOx	0.9407	0.9407	0.9407	0.9407	0.8395	0.7819	0.7819	0.7819	0.7819	0.7819	0.7819	0.7819	0.7819	0.7819	0.7819	0.7819	0.7819	0.7819	0.7819
	대형	PM	0.2026	0.2026	0.1634	0.1634	0.0915	0.0915	0.0915	0.0915	0.0915	0.0915	0.0915	0.0915	0.0915	0.0915	0.0915	0.0915	0.0915	0.0915	0.0915
		NOx	1,1226	1,1226	1,0991	1,0991	0.8322	0.8322	0.8322	0.8322	0.8322	0.8322	0.8322	0.8322	0.8322	0.8322	0.8322	0.8322	0.8322	0.8322	0.8322